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정 2005. 7. 29.
개정 2007. 1. 8.
2008. 3. 28.
2009. 4. 3.
2010. 3. 10.
2010. 9. 17.
2010. 12. 29.
2011. 6. 15.
2012. 7. 26.
2013. 4. 26.
2013. 7. 26.
2015. 1. 2.
2015. 3. 20.
2016. 5. 2.
2016. 12. 23.
2017. 8. 18.
2017. 12. 28.
2019. 2. 14.
2019. 12. 13.
전부개정 2021. 1.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약칭 NRC)로 표기한다. <개정 2010.12.29., 2016.5.2.>

제2조(목적)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경제 · 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필요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부설기관 및 분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 2021.1.19.>

② 부설기관 및 분사무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9.>

제4조(소관 연구기관) 연구회가 지도 · 관리하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국토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산업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통일연구원
8. 한국개발연구원
9. 한국교육개발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한국교통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정 2008.3.28.>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정 2013.7.26.>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정 2008.3.28.>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 한국행정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신설 2021.1.19.>

제5조(사업) 연구회는 제2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제 ·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 · 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경제 · 인문사회분야 인재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재양성 <신설 2019.2.14.>
6.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신설 2019.12.13.>

7. 국내외 연구 ·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신설 2021.1.19.>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2.14., 2019.12.13.>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7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명한다.

1. 이사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이사장추천위"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이사(이사장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 · 연구계 ·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3.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가. 기획재정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개정 2008.3.28., 2011.6.15., 2013.4.26.>
   나.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개정 2008.3.28., 2010.9.17., 2013.4.26., 2017.8.18.>
4. 감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면하며, 국무총리가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원(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이사의 임기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으로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선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선임안건에 한하여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임명은 1명에 한하며, 관련부처의 공무원이 이사로 임명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선임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제1항제3호나목의 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제외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 등) ① 국무총리는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의 추천을 받거나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9.]

제9조(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된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이사장후보자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장후보자심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임명된 날이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③ 이사장후보자심사위는 이사장 후보자를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무순위로 국무총리에게 추천한다.

④ 이사장후보자심사위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이사장후보자를 정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5일 전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후보자심사위는 이사장 후보자를 국무총리에게 추천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이사장후보자심사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이사장후보자심사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10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장추천위는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추천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상근임원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구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12조(정치적 중립) ① 연구회(상근임원을 포함한다)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회 및 이사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2.28.]

제13조(임원의 겸직) ① 상근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근임원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연구회의 임원(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해임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1.19.>
2. 신체 · 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1.1.19.>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6. 연구회에 대한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연구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전에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제15조(이사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를 제외한다) 중 임명된 날이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구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17.12.28.>

② 비상근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연구회의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때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를 제외한다)의 추천 <개정 2021.1.19.>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
4. 정관의 개정
5.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기본재산의 설정
8. 연구기관의 정관의 개정
9.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10.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
11. 연구기관 원장 경영목표의 승인 <개정 2008.3.28.>
1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14. 연구기관의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제공 및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자금차입의 승인
15.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6.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
17. 법령이나 정관(연구기관의 정관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3회(3월, 5월, 12월)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국무총리가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사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4. 연구기관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3조(이사회의 의사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1조제10호, 제21조제12호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3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제21조제12호에 따른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에 관한 안건은 관련부처 공무원이, 연구기관에 관한 안건은 해당 연구기관 원장이 각각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명, 임원의 해임 요청 등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이사회 안건이 본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본인이 요청을 하거나 임원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이사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무부서

제26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용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계약기간의 업적을 평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기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 연구계 · 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기획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획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경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영협의회는 이사장, 이사 및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경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 이사 및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와 같다.
③ 경영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개정 2021.1.19.>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30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연구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31조(운영재원) 연구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기본재산을 제외한다)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원칙) 연구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연도)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연구회는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21.1.19.>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출연금의 지급) 연구회는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등) ① 연구회는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6.12.23.>

2. 연구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21.1.19.>
3. 잉여금 처리안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필요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기관의 관리 등

제40조(원장의 선임 등) ① 연구기관의 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성과가 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최근 2년 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결과가 해당 연구기관 원장의 재임 기간 중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의 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원장 후보자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장후보자심사위', '이사장추천위'는 '연구기관 원장',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원장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41조(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원장후보자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후보자심사위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1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 · 연구계 · 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08.3.28., 2011.6.15., 2013.4.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관련부처 공무원이 원장후보자심사위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인 위원 수의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인 위원에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지명하는 원장후보자심사위 위원 4명은 원장후보자심사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가 추천한,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깊은 산업계 · 연구계 · 학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원장후보자심사위는 이사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응모자를 심사한다.

⑥ 원장후보자심사위는 응모자 중 3명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함으로써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이사회는 원장후보자심사위에서 추천된 원장후보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심사기준, 이사의 원장후보자심사위 위원지명, 심사 방법 등 그 밖에 원장후보자심사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42조(원장추천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원장을 추천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장추천위”라 한다)를 둔다.

② 원장추천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장추천위는 원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추천위는 제3항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원장이 선임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원장추천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43조(연구기관 감사의 선임) ① 연구기관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2.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

② 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임감사 선임의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원장선임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9.]

제44조(연구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상근임원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사회가 임원의 선임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

② 연구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19.]

제45조(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연구기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령, 연구회 정관 또는 연구기관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연구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전에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9.]

제46조(연구기관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등) ① 연구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기관으로부터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작성된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6., 2021.1.19.>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5월 2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21.1.19.>

제47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연구회는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 연구기관으로부터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기관의 결산서 제출) ① 연구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구기관의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21.1.19.>
2. 연구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21.1.19.>
3. 잉여금 처리안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9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평가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평가 내용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제5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에게 그의 관리와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인력교류) ① 연구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계 · 연구기관 ·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의하여 그 소속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② 인력교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4.3.>

제 7 장 보 칙

제52조(정관의 변경) 연구회의 정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53조(규정의 제정)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 복무, 회계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연구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은 연구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귀속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제55조(해산) ① 연구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가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56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연구회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의 임명 등)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로 하되 그 임기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 설립당시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1년·2년·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1년, 2년, 3년인 이사의 수가 균등하도록 한다.

④ 최초 이사(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연구회 설립등기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⑤ 연구기관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연구회 설립당시의 연구회의 직제와 직원임명 등에 관한 인사관계규정 및 기타 연구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은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설립위원 전원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5년 7월 29일 각각 기명날인함.

정관작성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설립위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박 종 구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	김 태 환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조 원 동 ㊞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장	하 갑 래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이 동 근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유 덕 상 ㊞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	이 창 호 ㊞
	현 진 권 ㊞
	홍 두 승 ㊞

부 칙 <2007.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연구회 직제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 기획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경영협의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의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사무국장”의 보수, 계약기간 등 권리와 의무는 “사무처장”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부기관장인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원장추천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부기관장인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2009.4.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연구회 직제규정, 회계규정, 경영협의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의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사무처장”의 보수, 계약기간 등 권리와 의무는 “사무총장”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연구회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규정, 원장추천위원회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의 “국무총리실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부 칙 <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연구회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규정, 원장추천위원회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의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부 칙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연구회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의 “NRCS”는 “NRC”로 한다.

부 칙 <2016.12.2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8.1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8.>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1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9.>

이 정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